

##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 지침

제정 2021. 11. 16 예규 제48호  
일부개정 2021. 12. 30 예규 제5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과 관련하여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신청자”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모집 입찰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2. “제안요청서”란 대상노선의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4. “기초금액”이란 해당 대상노선의 1일 1대 기준 운송비용을 말한다.
5. “제안금액”이란 입찰가격평가를 위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대상노선의 1일 1대 운송비용을 말한다.
6. “항목별 제안금액”이란 제안금액을 구성하는 운전직 인건비, 정비직 인건비, 기타복리후생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성과이윤을 말한다.

제3조(입찰의 공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노선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송원가를 대상노선의 운행계획에 적용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기초금액을 합한 값으로 산정한다.

1. 운전직 인건비

2. 정비직 인건비
3. 기타복리후생비
4. 연료비
5. 감가상각비
6. 정비비
7. 보험료
8. 기타차량유지비
9. 일반관리비
10. 성과이윤

②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공고 입찰의 경우는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공고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기초금액 등
2. 사업제안서 제출을 위한 기한과 구비서류
3. 대상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참가자 자격 등 필요한 기준과 절차
4. 제안서의 내용과 작성방법 및 제출기한
5. 낙찰자 결정방법
6.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방법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9. 이행협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10. 그 밖에 입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입찰공고 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대상노선의 상세노선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해당 입찰공고에 참여한 사업신청자가 없거나 단독 입찰인 경우. 다만,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이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등 해당 입찰의 특성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는 단독 입찰이어도 재입찰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4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 시장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운송사업의 개요
2. 기초금액
3. 사업시행 조건
4. 사업신청 방법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6. 제안서의 작성방법 및 규격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 조건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정면허 기간, 면허의 갱신 및 취소
2. 노선 및 운행계통
3. 재정지원
4. 운행차량 및 차내 편의시설
5. 차고지, 사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6. 운수종사자, 관리직, 정비직 등 근로자 총원 및 관리
7. 서비스 향상 계획
8. 서비스 평가
9. 그 밖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

제5조(사업신청자의 자격) 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3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장에게 일반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마을버스운

송사업을 용인시에 등록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27조에 따라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사업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운행차량의 요건) ①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행차량의 요건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일반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에 적합한 승합자동차

2. 신규 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에 따른 3년 이내의 차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이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8년 이내인 차량은 시장과 협의하여 운행차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에 참가한 자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업설명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실시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사업설명회 개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신청 방법) ① 사업신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표자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는 공고문에 정한 일시 내에 정해진 곳에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 1에 따르고 세부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따른다.

② 제안서의 평가 시 대상노선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 입찰가격평가와 가점부여는 시장이 시행하며, 정성적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제10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자 1인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단독응찰로 2회 이상 재공고 입찰이 진행된 경우

2.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이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경우

⑥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운송사업자에게 7일 이내에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⑦ 사업수행능력 중 정성적 평가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평가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⑧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가격제안서를 개봉한 후 시행한다.

⑨ 최종 제안서의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 가점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준정부기관·다른 지방공기업의 4급 이상 직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시장은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해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⑥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⑦ 시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업신청자에게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한다)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⑧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⑩ 심도있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제안서를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⑪ 입찰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협상적격자 선정) ① 시장은 제안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신청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③ 협상 우선순서는 제안서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사업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 및 이행협약 체결) ① 시장과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선정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시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이행협약의 체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된 사업시행조건, 운송사업자의 유의사항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협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 성립일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협약체결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협상결과
2. 협상금액 및 근거자료
3. 차량확보 및 운행계획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입찰 특례) ① 시장은 기존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노선입찰을 통해 신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신규 운송사업자가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수조건으로 하는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과 운송원가 절감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여건과 입찰규모, 운송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기준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상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특수조건 이행협약서를 따로 체결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특수조건 이행협약서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상을 결렬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즉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상노선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하나의 노선을 하나의 입찰단위로 입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이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등 해당 입찰의 특성에 따라 둘 이상의 노선을 하나의 입찰단위로 입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예규 제51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제9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총 계		100	
소 계		80	
사업 수행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1. 재무 건전성	5
		2. 경영관리	5
		▶ 대표자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경영기간	5
		3. 안전 및 준법운영	10
		▶ 노선버스 운송사업 안전운영	5
		▶ 노선버스 운송사업 준법운영	5
	정성적 평 가 (60점)	4. 경영관리 적정성	7
		▶ 회계관리 계획	4
		▶ 운송비용 절감계획	3
		5. 서비스 개선	18
		▶ 기본 서비스 제공 및 유지계획	4
		▶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5
		▶ 혁신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3
		▶ 근로자 처우개선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	6
		6. 버스 운영의 안정성	35
		▶ 차량 확보 계획	4
		▶ 차고지 확보 계획	4
		▶ 차고지와 기점과의 거리	4
		▶ 노선 운행계획	7
		▶ 차량 안전관리	10
▶ 운수종사자 확보계획	6		
입찰자격평가(20점)	7. 평가산정식에 의해 평가	20	
가점	8. 노선 중복도	5	
○ 평가항목은 입찰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저 평점으로 배점함			

[별표 2] <개정 2021. 12. 30>

**정량적 평가 기준**(제9조 관련)

1. 재무 건전성(5점)				
구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점
1	AAA	-	AAA	5.0
2	AA+,AA°,AA-	A1	AA+,AA°,AA-	
3	A+, A°, A-	A2+, A2°, A2-	A+, A°, A-	
4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5	BB+, BB°	B+	BB+, BB°	4.5
6	BB-	B°	BB-	
7	B+,B°,B-	B-	B+,B°,B-	4.0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공인된 외부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은 등급을 인정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유효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2. 경영관리(5점)				
가) 대표자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경영기간(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대표자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경영기간	○ 운송업체 대표이사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분야 경력에 대해 합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함		10년 이상	5.0
			5년 이상 ~10년 미만	4.5
			3년 이상 ~5년 미만	4.0
			3년 미만	3.5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신청자가 정한 대표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				

3. 안전 및 준법운영(10점)

가) 노선버스 운송사업 안전운영(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노선버스 운송사업 안전운영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자의 최근 1년간 교통사고 자료 $\frac{(\text{사망사고 건수})+(\text{중상사고건수}\times 0.7)+(\text{경상사고건수}\times 0.3)}{\text{사업신청자의 인가(등록)대수의 합}}\times 10$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운수회사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 활용	0.0	5.0
		0.0초과 ~0.2이하	4.5
		0.2초과 ~0.4이하	4.0
		0.4초과 ~0.6이하	3.5
		0.6초과	3.0

나) 노선버스 운송사업 준법운영(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노선버스 운송사업 준법운영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자의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자료 $\frac{\text{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건수의 합}}{\text{사업신청자의 인가(등록)대수의 합}}$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운수회사 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 활용	0.0	5.0
		0.0초과 ~0.05이하	4.5
		0.05초과 ~0.10이하	4.0
		0.10초과 ~0.15이하	3.5
		0.15초과	3.0

[별표 3]

**정성적 평가 기준**(제9조 관련)

1. 경영관리 적정성(7점)			
가) 회계관리 계획(4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회계관리 계획	○ 회계정보의 정확성 ○ 현금수입 관리의 투명성	매우우수	4.0
		우수	3.6
		보통	3.2
		미흡	2.8
		매우미흡	2.4
나) 운송비용 절감계획(3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운송비용 절감계획	○ 비용 및 원가절감 노력 - 연료별 연비 개선노력 등 ○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 - 회계정보의 정확성 개선노력 등	매우우수	3.0
		우수	2.7
		보통	2.4
		미흡	2.1
		매우미흡	1.8

2. 서비스 개선(18점)

가) 기본 서비스 제공 및 유지계획(4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기본 서비스 제공 및 유지계획	○버스차량내 쾌적성(청결,소음관리 등) 확보 및 유지방안 ○차량내 노선안내정보의 제공 및 안내방송의 정확성과 깨끗한 음질 확보방안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매우우수	4.0
		우수	3.6
		보통	3.2
		미흡	2.8
		매우미흡	2.4

나)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및 교통약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방안 ○난폭운전 및 교통신호 위반 방지를 위한 방안 ○고객불만 최소화를 위한 체계구축 및 처리지침 마련	매우우수	5.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미흡	3.0

다) 혁신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3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혁신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방안	매우우수	3.0
		우수	2.7
		보통	2.4
		미흡	2.1
		매우미흡	1.8

라) 근로자 처우개선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6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근로자 처우개선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	○복지프로그램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근로자의 근무여건 시설 설치계획	매우우수	6.0
		우수	5.4
		보통	4.8
		미흡	4.2
		매우미흡	3.6

3. 버스 운영의 안정성(35점)			
가) 차량 확보 계획(4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차량 확보 계획	○ 차량 확보 계획의 요구수준 충족여부 및 실현타당성 평가	매우우수	4.0
		우수	3.6
		보통	3.2
		미흡	2.8
		매우미흡	2.4
나) 차고지 확보 계획(4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차고지 확보 계획	○ 차고지 확보현황과 확보방안의 적정성 평가	매우우수	4.0
		우수	3.6
		보통	3.2
		미흡	2.8
		매우미흡	2.4
다) 차고지와 기점과의 거리(4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차고지와 기점과의 거리	○ 차고지와 기점(첫번째 정류소)간의 간격을 평가 ○ 매우우수(2km 이하), 우수(2~6km), 보통(6~10km), 미흡(10~14km), 매우미흡(14km 초과) ○ 입찰단위가 다수의 대상노선 및 다수의 운행계통인 경우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매우우수	4.0
		우수	3.6
		보통	3.2
		미흡	2.8
		매우미흡	2.4
라) 노선 운행계획(7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노선 운행계획	○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의 적정성	매우우수	7.0
		우수	6.3
		보통	5.6
		미흡	4.9
		매우미흡	4.2
마) 차량 안전관리(10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차량 안전관리	○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 예방 계획의 적정성 ○ 사고발생시 위기관리 체계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바) 운수종사자 확보계획(6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운수종사자 확보계획	○ 운수종사자 확보계획의 적정성	매우우수	6.0
		우수	5.4
		보통	4.8
		미흡	4.2
		매우미흡	3.6

[별표 4]

**입찰가격평가 기준**(제9조 관련)

- 제안금액 산정
  - 가) 대상노선의 기초금액 이하로 제안금액을 산정한 후, 금액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
  - 나) 항목별 제안금액을 합산하여 제안금액을 산정한 후, 가격제안서를 작성한다.
- 입찰가격 평가(20점)
  - 가) 입찰가격평가는 대상노선의 기초금액과 사업신청자의 제안금액을 활용하여 아래 산식으로 평가한다.
  - 나) 입찰가격 산식
 

- 제안금액이 기초금액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제안금액 / 해당제안금액 )
    - 제안금액이 기초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제안금액 / 기초금액의 80% 상당가격 )]+  
 [2 × (기초금액의 80% 상당가격 - 해당제안가격)/(기초금액의 80% 상당가격-기초금액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제안금액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제안금액으로 함  
 2. 제안금액이 기초금액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60%로 계산
- 비교
  - 가) “제안금액”이란 입찰가격평가를 위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대상노선의 1일 1대 운송비용을 말한다.
  - 나) “항목별 제안금액”이란 제안금액을 구성하는 운전직 인건비, 정비직 인건비, 기타복리후생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성과이윤을 말한다.
  - 다) 대상노선의 협상금액은 기초금액에 대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항목별 제안금액으로 한다.
  - 라) 향후 협상과정에서 대상노선의 운행계통(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대수 등)이 조정될 경우 협상금액은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다.  
 ※대상노선의 협상금액 산정 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마) 대상노선의 협상금액은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비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별표 5]

**가점**(제9조 관련)

○ 노선 중복도(+5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노선과 정류소가 중복되는 유사노선을 운행 중인 사업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나) 유사노선의 인정은 사업신청자가 민영제로 운행하는 일반형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중 1개 노선에만 적용하며, 관련 증빙자료(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해당 노선의 인가 및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식 :  $5 \times (\text{중복 정류소의 수} / \text{총 정류소의 수})$

※ 중복 정류소의 수 : 대상노선의 정류소와 중복되는 유사노선의 정류소 수

※ 총 정류소의 수 : 대상노선의 총 정류소의 수